**회원가입신청서**

**(Application for 한·CIS기업인협회 Membership)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회 사 명(Company Name)  | 한글(Korean)영문(English) | Homepage | *http://* |
| 대 표 자(Representative) | 한글(Korean)영문(English) | 휴대전화(Mobile Phone) |  |
| 사업자등록번호(Business Registry Number) |  | E-mail |  |
| 업종(Business Type) |  | 주거래은행(Main Bank) | 은행 지점(Bank) (Br.) |
| 회사설립일(Date of Establishment) |  년 월 일 Year Month Day | 종업원수(Employees) | 총원(Total) |
| 소재지(Add.) | 본 사(Head Office) | 한글(Korean)영문(English) | (Tel)(Fax) |
| 주연락처(Contact Point) | 한글(Korean) | (Tel)(Fax) |
| 회비담당자 | 성 명 |  | 회사전화 |  |
| 휴대전화 |  | E-Mail |  |
| (사)한·CIS기업인협회 추천인 (소속/성명 : ) |
|  (사)한·CIS기업인협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. Supporting the founding purpose and objectives of the (사)한·CIS기업인협회, I(We) would like to register as a member of (사)한·CIS기업인협회. 년 월 일 Year Month Day회사명 대표자 또는 서명 Company Name Representative Signature |
|  **사단법인 한·CIS기업인협회 회장** |  귀하 |

|  |
| --- |
| **회원가입 약관** |
| **제1조(목적)**  본 약관은 사단법인 한·CIS기업인협회 회원가입에 따른 권한 및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.**제2조(약관개정)**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며, 개정된 약관은 홈페이지([http://www.kobea.biz](http://www.kbipa.org))에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.**제3조(회원)**   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. 1.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2. 단체. 다만,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이 있으며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3. 자연인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**제4조(가입)** 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(방문, 인터넷, 팩스)하여야 합니다. **제5조(회원의 권리)**  회원은 본 협회가 주관하는 주요 사업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.**제6조(권리행사 제한)**  회원으로 총회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2회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,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연체회비의 완납 시까지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**제7조(회비)** ① 회원은 신규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고 고지된 『가입비 및 연회비 안내』에 따라 가입비 원 및 연회비 원 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②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에도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**제8조(제명)**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협회에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 ② 제3조 제1항 제1호, 제2호에 규정된 법인 또는 단체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됩니다. 1. 법인인 회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 종결등기가 된 때 2. 법인이 아닌 단체인 회원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산한 때 ③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연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됩니다. 1.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.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습니다. 1. 회비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2.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. 범죄 기타 행위로써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때 4. 기타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명을 위한 이사회 결의 10일 전까지 당해 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뜻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  |
|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합니다. 년 월 일  회사명 대표자 또는 서명  |